

영등포구의회
제152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0. 4. 15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李 憲 永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61호로 2010년 3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3월 26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

2. 제안이유

2009년 4월 1일 「지방공기업법」 과 2009년 9월 21일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의 일부개정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」 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임원의 임면 요건 변경 (안 제8조, 제9조)
- 나. 이사회 의장선임 및 운영 규정 보완 신설 (안 제13조)
- 다.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·구성 및 운영 규정 개정 (안 제17조 부터 제23조까지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지방공기업법 제58조, 제59조
 -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, 제56조의4
- 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● 이 조제안은 상위 법률인 「지방공기업법」 개정(2009. 4. 1)과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개정(2009. 9. 21)으로 인하여 이에 맞게 보완·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

가. 안 제8조(이사장)는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·개편하고 경영성과에 따라 1회 연임하던 것을 1년 단위로 연임하도록 하였음.

- 임원추천위원회의 대상을 확대하여 임원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.

- 연임제한 해제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, 직무실적 등의 능력에 따라 책임경영이 정착되도록 하였음.

나. 안 제9조(이사)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,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,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도록 하였음

- “지방공기업 설립·운영기준”에 따른 것이며 이사의 소속에 따라 임면하도록 한 것임.

다. 안 제13조(이사회)의 의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비상임이사에 대하여 회의 참석수당과 이사활동에 필요한 실비 및 경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였음.

- 이사장이 이사회 의장직을 맡던 것을 비상임이사 중 호선하도록 한 것은 공단운영에 대한 공정성을 높였음.

- 이사에게 필요한 실비 및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업무상 소요되는 보상성격이 아닌 필수경비를 지급하여 적극적인 업무지원으로 판단하였음.

라. 안 제17조(임원추천위원회설치)는 영등포구에 두던 것을 공단에 설치하도록 하였음.

- 구에서 하던 임원추천권을 공단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바람직한 개정임.

마. 안 제18조(구성)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자 중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은 그대로 두며, 구의회가 추천하는 2명을 3명으로 하고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3명은 2명으로 변경하였음.

- 임원추천자 중 공단은 1명 줄이고 구의회는 1명 늘린 것은 공단의 비중을 낮추고 구민을 대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대적 배경에 부합됨.

바. 안 제21조(회의)는 구청장이 소집하던 것을 위원장이 하도록 하고 간사는 지방공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영등포구의 부서장이 하던 것을 공단의 임원인사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하였음.

- 이사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스스로 공단이 판단하여 소집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간사 또한 공단의 담당팀장이 맡는 것이 민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함.

● 이와 같은 개정안은 상위 법률인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